제1강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필수과정

<목차>

- 1. 퇴직금 제도
- 2. 퇴직연금 제도

1강: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 1. 퇴직금제도
- 가. 퇴직금제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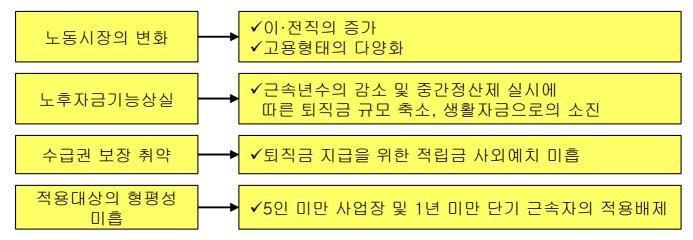
퇴직금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자들의 노후보장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1961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고, 현재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만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변천사

1953년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강제가 아닌 임의형제도)
1961년	1961년 근로자 30인 이상의 기업에는 퇴직금제도 강제로 규정
1975년	1975년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으로 30인 이상 -> 16인 이상으로 확대적용
1980년	1980년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금지조항 신설
1987년	1987년 16인 이상 -> 1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적용
1989년	1989년 10인 이상 ->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적용
1997년	1997년 퇴직금중간정산제와 퇴직연금보험제 신설

1강: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나. 퇴직금제도의 한계



2. 퇴직연금제도

가.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퇴직연금제도 도입 전까지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 따라 퇴직금이 정산되었으며, 퇴직금 사용용도의 절반이상이 생활비 충당 등으로 사용되어 퇴직금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사외예치 ·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안정적으로 퇴직급여(일시금, 연금)를 받아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나. 제도도입의 목적

퇴직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퇴직연금제도이며, 제도도입의 목적은 첫번째로 연금수급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1) 연금수급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비해 퇴직연금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일시금 뿐만 아니라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하여 본격적인 노후생활 수단으로 활용 가능

2) 수급권의 보호 :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정적인 금융기관 등에 사외 예치하여 기업이 도산하거나 그 외 다른 기업내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호

3) 퇴직급여의 통산(通算) : 퇴직급여의 통산기능을 통해 퇴직급여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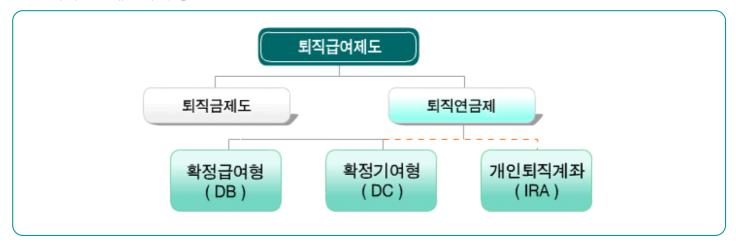
은퇴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이직과 전직을 하는 등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노동 환경에서 퇴직급여를 별도로 모아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퇴직급여통산기능을 가진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근로생활의 전 단계 동안 지속적으로 퇴직 후를 대비

4) 세제 혜택 :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노후생활의 책임을 지게 되는 추세에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기반형성을 위해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기능을 강화한 퇴직연금제를 도입

1강 :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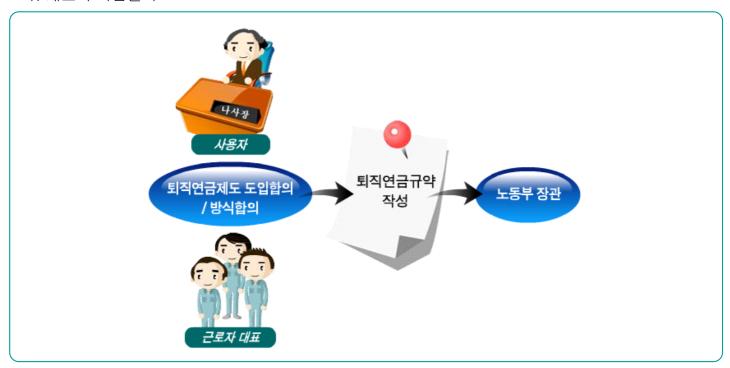
다. 퇴직연금제도의 구성



* 확정급여형(DB)제도

- : 퇴직금과 같이 퇴직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이 결정되면 받을 급여액이 확정되는 제도
- * 확정기여형(DC)제도
 - : 사전에 퇴직급여를 위하여 부담하는 기여금액은 확정되지만 퇴직시점에서의 실제 급여는 부담금의 운용성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제도
- * 개인퇴직계좌(IRA)
 - : 퇴직일시금을 받은 개인이 통산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10인 미만 기업이 개인 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도입으로 인정

라. 제도의 가입절차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처리업무는 지방 노동관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하면 됩니다. 신고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입증하기 위한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동의서 첨부는 생략 불가)

* 퇴직연금규약 작성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란 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

필수과정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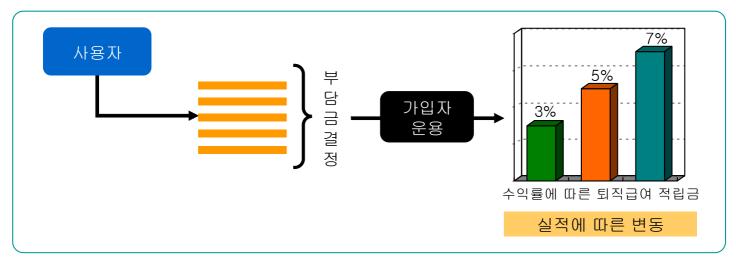
1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2절 개인퇴직계좌

1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 개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급여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형과는 다르게 근로자인 가입자가 제도의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고, 이를 적립한 부담금으로 가입자 책임하에 스스로 운용하여 그 실적에 따라 본인의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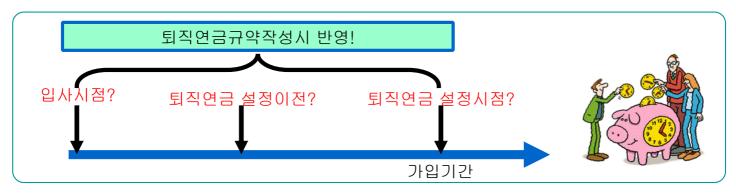
나. 기본사항

1) 가입자 대상기준

가입자	비 가입자(적용제외 자)
• 퇴직급여제도 가입한 자를 의미 • 가입자격, 가입시기, 가입방법 등은 규약에서 결정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 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가입 대상으로 할 것이냐는 규약에서 결정

2) 가입기간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의 설정 이후 당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반영할 수도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게 됩니다.



3)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부담에 있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해야하며,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추가로 부담한 부담금에 대해 가입자가 얻는 세제혜택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로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금

- ✓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
- ✓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음



가입자 추가부담금

+

연금저축액

=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부담금의 납부

- ✓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는 연간 1회 이상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음✓ 사용자는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
- ☞ 부담금 납부기한이 경과된 미납금액에 대한 처리
- 사용자가 부담금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가능
-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금에 가산하여 자산관리기관에 납부
- 사용자는 부담금이 미납되었을 경우 부담금의 미납사실 및 연장된 납부기한 등을 가입자에게 통지

4) 부담금 납부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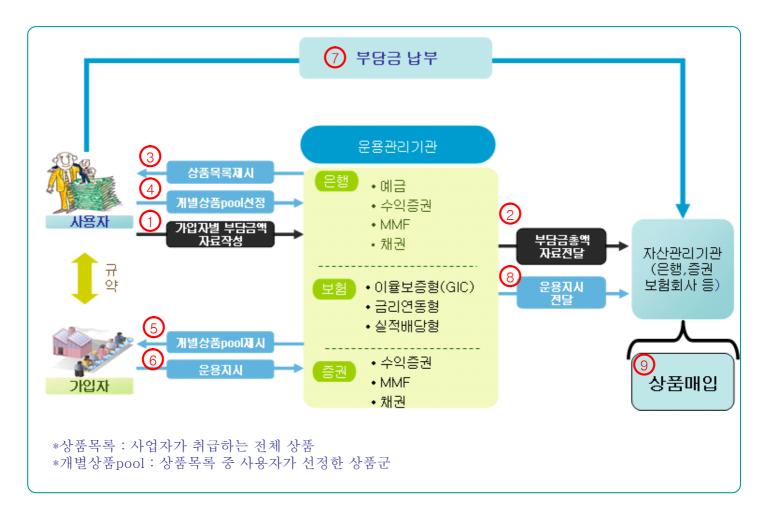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상황을 운영관리기관 해당 영업점 및 퇴직연금 공동기록관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영구조

1) 부담금 납부에 따른 처리절차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에 가입자별 부담금액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운용관리기관은 가입자별 부담금자료를 등록하고
- ② 부담금총액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 ③ 이때 운용관리기관은 사용자에게 상품목록을 제시하고
- ④ 사용자가 개별상품pool을 선정하면
- ⑤,⑥ 가입자는 선정된 개별상품pool에서 운용관리기관에 부담금을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지 운용지시를 하고
- ⑦ 사용자는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⑧ 그리고 운용관리기관은 사용자가 작성한 가입자별 부담금액 자료와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한 부담금이 일치하면 가입자가 지시한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 ⑨ 자산관리기관은 상품을 매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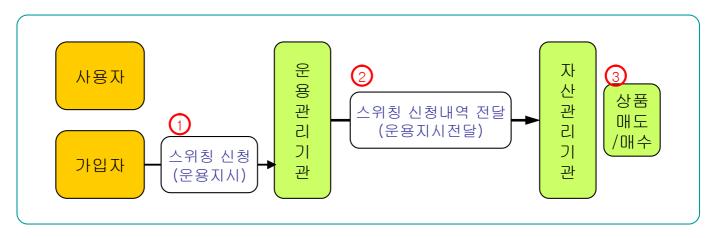
- 2) 적립금의 운용방법 변경(스위칭)
 - ① 운용방법 및 비율등록과 스위칭의 차이점

	운용방법 및 비율등록	스위칭
개념	새로 입금되는 부담금의 운용방법(상품, 비율)을 등록하는 것	기존 운용중인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 하는 것 (상품,비율)
예시	새로 입금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A상품 60%, B상품 40%로 운용할 것을 등록하는 것 → 부담금100만원 입금시 A상품 60만원, B상품40만원	적립금100만원 (A상품 50만원, B상품 50만원) → 스위칭신청 : A상품 20만원 일부매도, B상품 10만원 일부매도 → C상품 30만원 매입
운용지시 대상	새로 입금되는 부담금 (new money)	기존에 운용중이던 적립금 (old money)
계속적 속성 (한번 등록하면 변경전까지 계속적으로 적용)		일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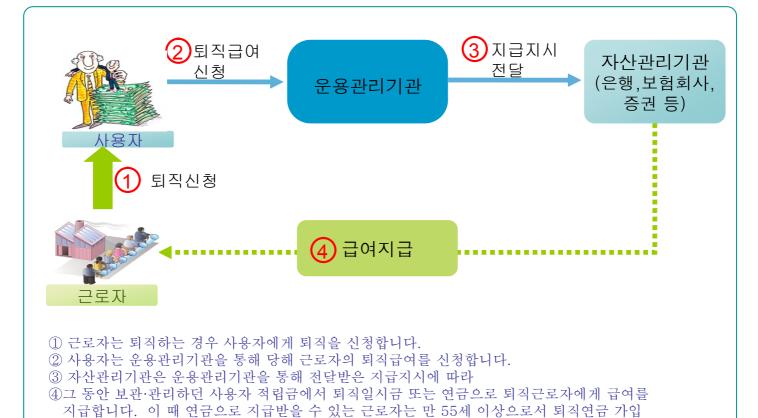
② 스위칭 처리절차

기존 운용중인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스위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운용방법 및 비율등록과 스위칭의 차이점은 바로 운용지시 대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칭은 기존에 운용중이던 적립금의 운용방법,즉 운용상품 및 운용비율을 변경하는 것이고 운용방법 및 비율등록은 새로 입금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방법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위칭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그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① 가입자가 기존에 적립금을 A상품 50%, B상품 50%로 운용 중이었다가 A상품 30%, B상품 40%, C상품 30%로 운용방법을 변경할 경우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에 스위칭 신청을 하게되고
- ② 운용관리기관은 가입자가 지시한 스위칭 신청내역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게 되며.
- ③ 자산관리기관은 그 운용지시에 따라 상품을 매도,매수 처리하게 되어 가입자는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급여지급



☞수급별요건은?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로 한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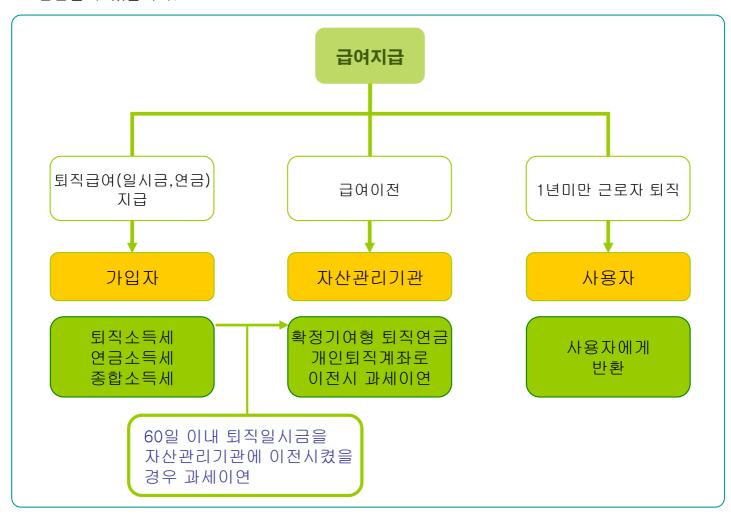
유지하고 싶은 가입자는 개인퇴직계좌로 옮기면 됩니다.

연 금	만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일시금	연금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입자,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자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 지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가입자에게는 일시금으로만 지급이 됩니다. 일시금의 지급을 받은 퇴직자 중에서 퇴직연금제도를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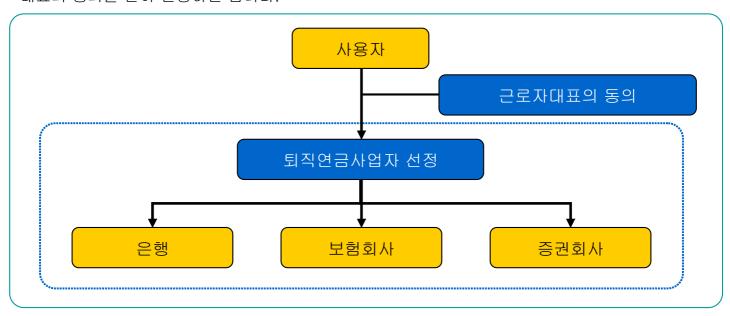
☞급여지급 상세

급여지급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가입자가 퇴직시 퇴직급여를 퇴직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가입자는 퇴직소득세를 내야하며, 연금수급조건에 해당하고 연금수급을 희망할 경우 그에 따른 연금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연간 연금총액이 6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받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계약으로 이전하는 급여이전의 경우,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차후에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급여가 사용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 라. 제도의 운영
- 1)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퇴직연금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그 외 자산운용사 중에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선정하면 됩니다.



☞사업자 선정시 확인사항은?

•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점검 재무건전성 (자기자본비율, 수익성의 정도 등) • 퇴직연금의 특성상 장기적인 자산으로 금융기관의 안정성 안정성이 확보된 신용도가 우량한 사업자 • 사용자와 가입자가 쉽게 찾아갈 수 있고 퇴직 후에도 접근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 • 저금리시대에 가입자의 적립금을 증대할 수 있는 능력보유 자산운용 • 다양한 운용방법 제시 및 정보제공.가입자 교육 제도 관리 • 제도 관리(운용관리,자산관리) 및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및 운영 인프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성공적인 제도운영 편안한 노후생활

2) 적립금의 운용

①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확정기여형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그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므로. 제도의 특성상 운용방법의 선택과 변경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운용방법의 변경을 자유롭게 매 반기 1회 이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하는 위험자산에 투자할 경우에는 운용방법별 적립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고,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도 금지하여 가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위험자산 종류 및 투자한도

	투자한도 ^{주1)}	
개별투자	 <주식 등에 대한 투자> •국내 외 상장주식(투자회사 주식은 제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및 후순위 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연계증권 (최대손실범위가 원금의 10% 초과) •주식형(주식60%이상)간접투자증권 •혼합형(주식40%초과 60%미만)간접투자증권 •피생상품간접투자증권 •고위험 간접투자증권 * 투자적격등급 이외 채권, 기업어음, 후순위채권 등에 대한 투자한도 :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이상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실물간접투자기구 •실물간접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접투자기구 	투자금지
	<외국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 •외국의 투자적격채권 •외국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 (외국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 이상)	30%
집중투자	•동일법인 발행 유가증권 (간접투자증권등 제외)	30%
이해상충	•사용자와 계열회사 또는 지분법 적용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신용공여 성격의 투자자산	10%

주1) 사용자별 적립금 총액에 대한 투자한도

② 적립금 운용방법의 정보제공

운용관리기관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금융상품 정보 이외에 제시하는 정보사항에는 원리금보장여부, 위험자산여부, 투자한도,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및 보수와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는 상기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의 운용지시전에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보 제공된 사실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Web(loa-in)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중 운용관리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하여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 이상의 다양한 운용방법을 제시하여 근로자의 투자성향 및 선호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금융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운용방법에 따른 이익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가지 이상의 운영방법이란 예를 들면 정기예금,수익증권,보험계약 등을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 ✓ 관련법규에서 정한 정보 이외에 운용관리기관이 제시하는 정보사항
- : 원리금보장여부, 위험자산여부, 투자한도,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보수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내용
- ✓ 가입자는 상기의 운용방법(상품)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의 운용지시전에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보제공된 사실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web(log-in)을 통해서 확인.
- * 확인서면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의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방법인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의 방법을 포함
- ✓ 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야 함.
- ✓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

③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상품의 특성과 투자한도

	원리금보장	위험자산	투자한도	예금자보호대상	보수 및 수수료
정기예금	0	X	제한없음	X	
수익증권	X	0	투자제한 (아래 표 참조)	X	판매보수,수탁 보수,운용보수, 사무보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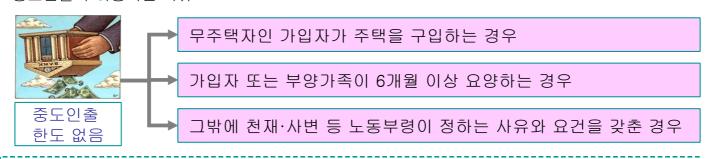
<수익증권 투자 한도>

투자금지	- 주식형(주식 60%이상 편입가능) 간접투자증권 - 혼합형(주식 40%초과 주식 60%미만 편입가능) 간접투자증권 - 고위험 간접 투자증권
30% 이내	- 외국 간접 투자증권(투자금지 상품 이외) - 외국채권에 주로 투자(50% 이상)하는 간접 투자증권 등

3) 중도인출

확정급여형과는 달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가입자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그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사유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거주자의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④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개정 2001.12.31.]

⑤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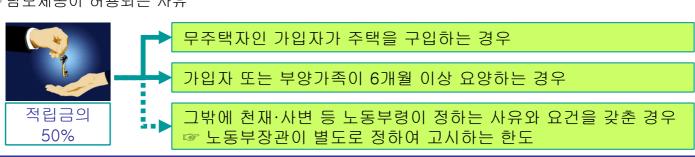
4) 수급권의 보호

- 수급권 :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

- 수급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

확정기여형의 운용구조를 보면 사용자 부담금을 회사내에 보관하지 않고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부하여 적립하게 되어 있어 회사가 도산하거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퇴직시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수급권이라 하며 확정기여형의이런 운용구조로 인해 근로자는 퇴직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적립금은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 정작 퇴직연금을 받을 시기에 이를 받지못하여 근로자의 노후대책마련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원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50%한도에서 양도 및 담보제공을 허용하며 그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요건을 갖춘 경우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까지 양도 및 담보제공이 허용됩니다.

☞ 담보제공이 허용되는 사유



5) 계약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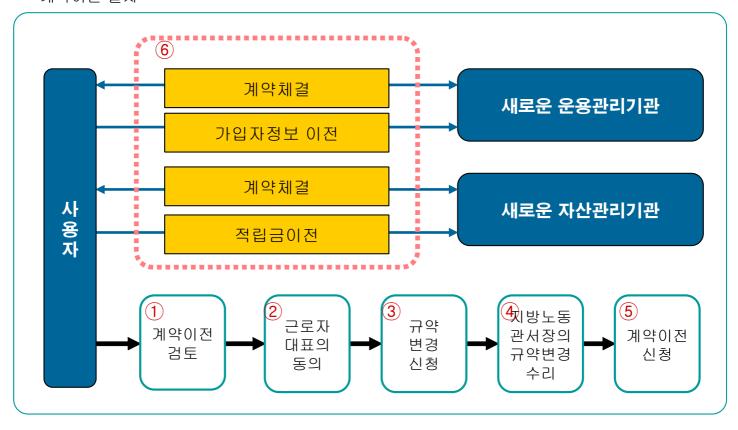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현재의 사업자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 및 제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 향후 제도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예측되어지면 사업자 변경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검토결과 사업자 변경이 결정되면 이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계약이전 검토 및 규약 변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단, 개인퇴직계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계약이전시 사용자는 새로운 운용관리기관 또는 자산관리기관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에는 가입자 정보를,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에는 적립금을 이전시키면 되며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나 계약이전이 꼭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사업자내에서의 제도변경도 계약이전으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절차는 상기 계약이전 절차를 준용하며 자세한 사항은 규약에서 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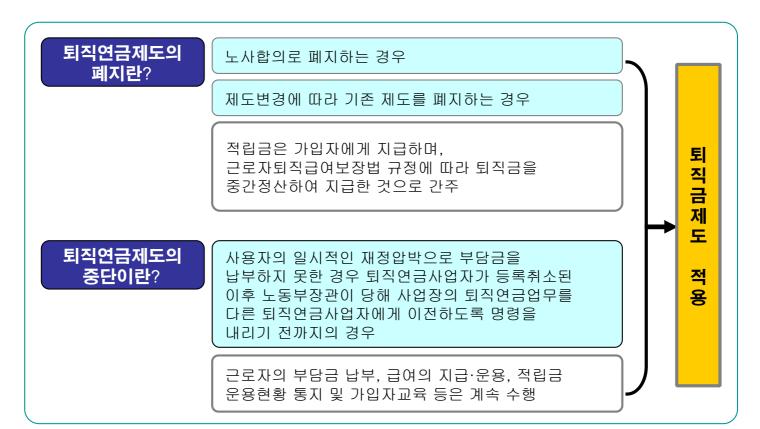
☞계약이전 절차



6)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란 노사합의로 폐지하는 경우, 제도변경에 따라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는 경우란 사용자의 일시적인 재정압박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취소된 이후 노동부장관이 당해 사업장의 퇴직연금업무를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이전하도록 명령을 내리기전까지의 경우 등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부담금 납부, 급여의 지급·운용,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및 가입자교육 등은 계속 수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



2절. 개인퇴직계좌 (IRA)

1. 개인퇴직계좌

가. 개요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으로, 퇴직일시금을 받은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IRA와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적용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기업형IRA 가 있습니다.

나. 기본사항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개인형 IRA는 가입자 본인이 중간정산 또는 퇴직시 퇴직소득세를 포함한 퇴직일시금 전액을 부담하며, 기업형IRA의 경우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은 기업형IRA에 한해서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로 부당한 부당금에 대해 가입자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이때 추가로 부담한 부담금에 대해 가입자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A	기업형 IRA	
• 퇴직일시금 전액 • 가입자 추가부담 불가	사용자의 부담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입자 추가부담 가능	

2)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납부는 개인형IRA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포함한 퇴직일시금 전액을 60일 이내에 납부하고, 이 때 중간정산시에는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60일이내이고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 지급받은 날부터60일 이내 납부하고 퇴직시에는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 납부할 경우 과세이연 됩니다.

기업형IRA의 경우 사용자가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형 IRA	기업형 IRA
• 퇴직소득세를 포함한 퇴직일시금 전액을 60일 이내 납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 사용자는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

과세이연

- 중간정산시
 -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60일 이내
 -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퇴직시 :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

3) 적립금 운용방법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 운용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거의 동일합니다.즉, 운용관리기관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금융상품 정보 이외에 제시하는 정보사항에는 원리금보장여부, 위험자산여부, 투자한도,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및 보수와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는 상기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의 운용지시전에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보 제공된 사실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Web(log-in)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중 운용관리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하여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이상의 다양한 운용방법을 제시하여 근로자의 투자성향 및 선호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금융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운용방법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가지 이상의 운영방법이란 예를 들면 정기예금,수익증권,보험계약 등을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퇴직계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관련법규에서 정한 정보 이외에 운용관리기관이 제시하는 정보사항
- : 원리금보장여부, 위험자산여부, 투자한도,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보수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내용
- ✓가입자는 상기의 운용방법(상품)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의 운용지시전에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보제공된 사실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web(log-in)을 통해서 확인.
 - * 확인서면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의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방법인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의 방법을 포함
- ✓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야 함.
-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
- ☞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상품의 특성과 투자한도

	원리금보장	위험자산	투자한도	예금자보호대상	보수 및 수수료
정기예금	0	Χ	제한없음	X	
수익증권	X	0	투자제한 (아래 표 참조)	X	판매보수,수탁 보수,운용보수, 사무보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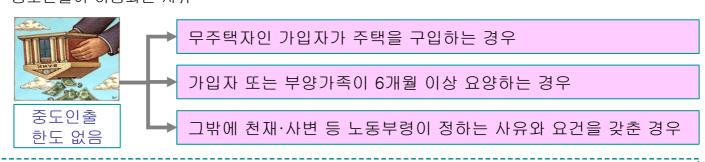
<수익증권 투자 한도>

투자금지	- 주식형(주식 60%이상 편입가능) 간접투자증권 - 혼합형(주식 40%초과 주식 60%미만 편입가능) 간접투자증권 - 고위험 간접 투자증권
30% 이내	- 외국 간접 투자증권(투자금지 상품 이외) - 외국채권에 주로 투자(50% 이상)하는 간접 투자증권 등

4) 중도인출

확정급여형과는 달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가입자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그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사유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 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거주자의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④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 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개정 2001.12.31.]

⑤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 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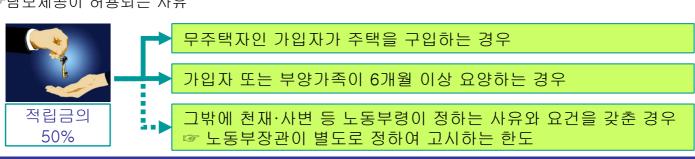
5) 수급권의 보호

- 수급권 :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

- 수급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

확정기여형의 운용구조를 보면 사용자 부담금을 회사내에 보관하지 않고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부하여 적립하게 되어 있어 회사가 도산하거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퇴직시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수급권이라 하며 확정기여형의 이런 운용구조로 인해 근로자는 퇴직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적립금은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 정작 퇴직연금을 받을 시기에 이를 받지 못하여 근로자의 노후대책마련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원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50%한도에서 양도 및 담보제공을 허용하며 그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요건을 갖춘 경우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까지 양도 및 담보제공이 허용됩니다.

☞ 담보제공이 허용되는 사유



6)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확정급여형과는 달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가입자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요양하는 경우, 그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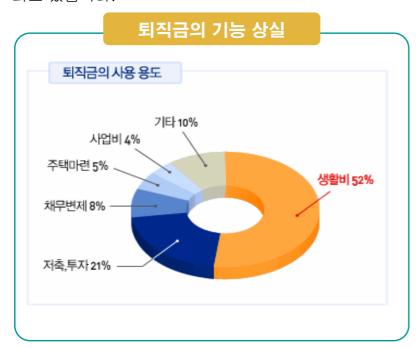
개인형 IRA	연금	연금수급요건: 55세 이상, 5년 이상의 연금수급조건 (가입기간 제한 없음)
ALSIKA	일시금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가입자
기업형 IRA	연금	연금수급요건: 5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자 (5년 이상의 연금수급조건)
	일시금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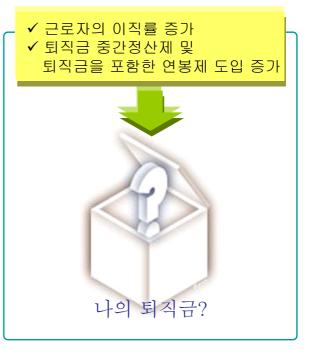
2. 개인형 IRA

가. 도입배경 및 취지

2005년 노동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5.8년으로 이직이 매우 빈번해 지고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제 및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의 도입 증가추세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에도 퇴직금을 수시로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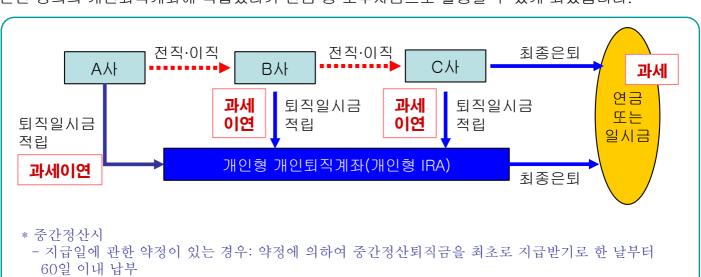
이에 따라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퇴직금이 퇴직 후 노후 대비용 자금이 아닌 현재의 생활비등으로 사용되면서 정작 퇴직 후에는 노후생활 자금이 없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받거나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이나 퇴직일시금을 써버리지 않고 모아 둘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였고 그래서 도입된 것이 개인퇴직계좌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개인퇴직계좌의 도입으로 근로자는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일시금을 본인 명의의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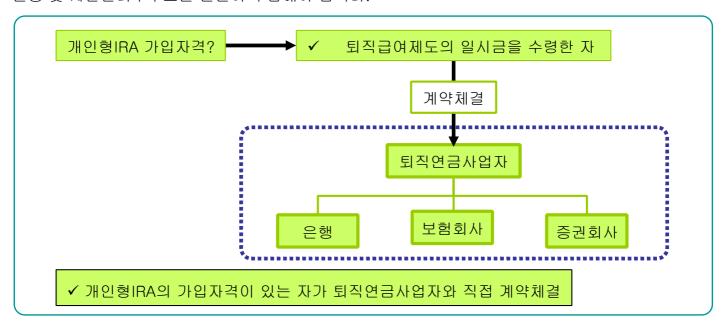
-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납부

* 퇴직시 :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 납부

2) 가입자격 및 계약체결

개인형IRA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즉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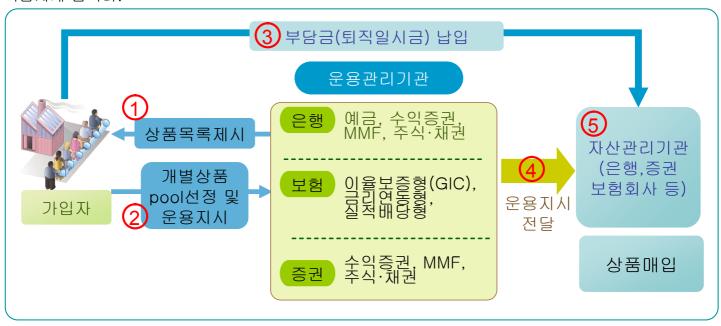
이 경우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며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을 통해서 개인퇴직계좌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개인형IRA의 경우에는 연금규약을 작성할 필요없이 가입자 개인이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면 되므로. 그에 따른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운영구조

개인형IRA의 경우 가입자 개인이 퇴직 또는 이·전직을 통해 수령받은 퇴직일시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직접 납부하며, 운용관리기관에서 제시하는 상품중에서 자신의 판단하에 투자상품의 운용방법을 선택한 후 스스로 이를 운용관리기관에 운용지시를 내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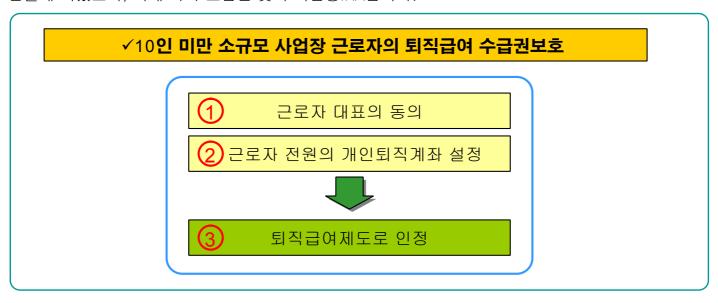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관에 가입자가 지시한 운용지시를 전달합니다.그리고 자산관리기관은 그 운용지시에 따라 가입자의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며 그에 따른 운용결과에 대해서는 가입자 본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다. 기업형IRA

1) 도입배경 및 의의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을 도입할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할수 있는 여력이 없어 도산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반 기업보다 더 많은 실정이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제도마련이 필요하였고, 이에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조항만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입된 것이 기업형IRA입니다.



2) 도입 및 제도운영 시 준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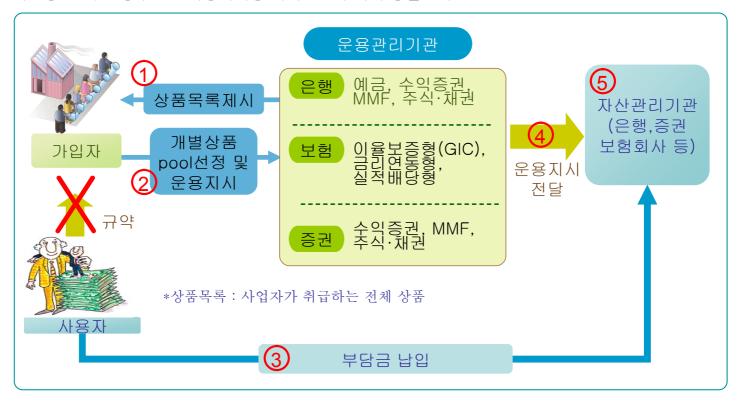
기연형IRA를 성정하여 우연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들이 주스되어야 한니다

기업영IRA를 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아래의 사양들이 문주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근로자 대표의 동의	
부담금의 부담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입자 추가 부담금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가입자 추가부담 가능	
부담금의 납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	
부담금의 미납	사용자는 가입자의 탈퇴 시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 미납의 경우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	

그 밖의 근로자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운영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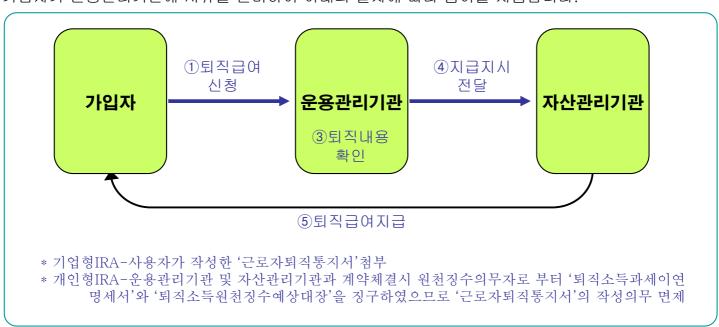
기업형IRA의 운영구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거의 동일합니다.



라. 급여지급

1) 급여지급세부절차

가입자가 운용관리기관에 서류를 준비하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필수과정

가. 투자의 개념

투자란 장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위해 현재 자금을 지출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서 자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대상은 대표적으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이 있을 수 있고 그 외 부동산이나 토지 등 기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모든 것들이 지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할 때 그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수익과 #4위험의 정도입니다. 얼마나 수익이 있을까?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위험이 따를까? 라는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없이는 소위 말하는 '묻지마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투자때문에 올바른 자산운용이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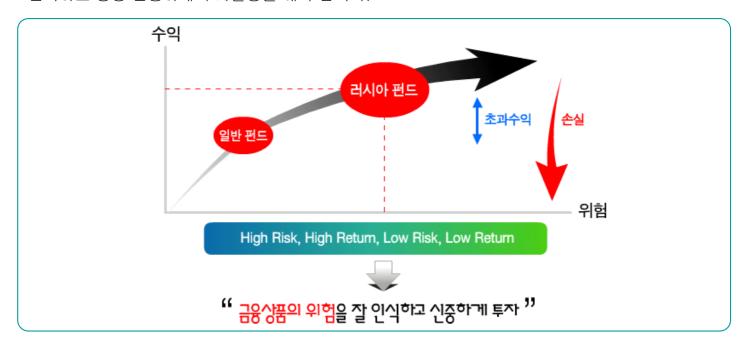
나. 위험과 수익

1) 위험(Risk) 과 수익(Return)의 개념



1) 위험(Risk) 과 수익(Return)의 관계

1997년 국내에서 러시아투자펀드가 판매되었는데 그 당시 투자자들에게 일반펀드보다 더 큰 수익을 더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투자자들은 초과수익을 내기 위해 그 당시 러시아의 경제상황에 대해 분석하지 않고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4 1998년 러시아는 국가부도사태를 맞았고 투자자들은 원금회수마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펀드의 예시와 같이 자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는 그만큼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투자자는 금융상품의 위험을 잘 인식하고 항상 신중하게 투자결정을 해야 합니다.



3) 위험(Risk)의 종류

환율위험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으로 외화표시상품은 원화로 재계산하여 자산가치를 파악하므로 만약 외국통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해외투자자산의 투자수익이 감소될 수있으며, 이렇게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변동가능성을 환율위험이라고 합니다.

금리변동의 위험

금리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으로 채권가격과 이자율(금리)은 정반대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 합니다. 또 만기가 길수록 이자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폭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만기가 긴 장기채가 단기채보다 채권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변동 위험

주식,채권,투신 등 가격의 변동에 따라 발생되는 위험으로 이는 기업실적 및 경제상황에 따라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이 강세 장과 약세 장을 순환하며 움직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은 상품 등을 산 후에 팔고 싶을 때 팔리지 않는 위험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 위험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가 감소하여금융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을 말합니다. 이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스인류이 무가사스부에 모 미친 스도, 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수익률이 물가상승분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채권, 주식 등을 발행하는 국가나 기업의 신용 등급 저하 또는 도산에 의해 투자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위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발행인이 원금과 이자를 제때 상환할 수 없다면 그 채권은 부도채권으로 분류되고, 발행인 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채권가격도 하락하게 됩니다.

국가위험

국가위험은 개발도상국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도가 높은 정치적 사건, 재정상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를 악화시키고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 다. 자산배분(asset allocation)
- 1) 자산배분 및 자산구성비율의 의의

포트폴리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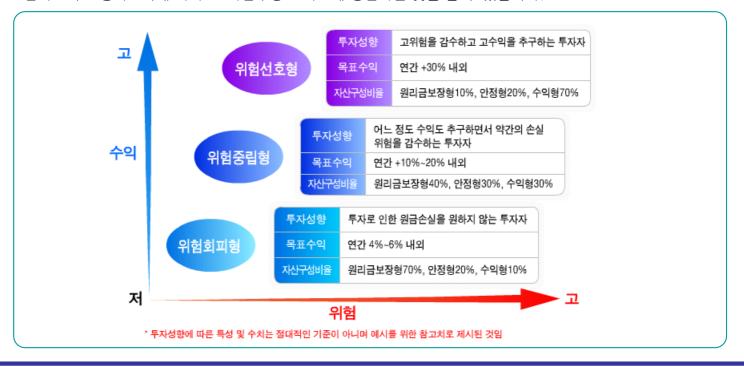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한 곳에 투자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피하고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련의 투자과정을 '자산배분'이라 합니다. 자산구성비율은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위험회피형, 위험중립형, 위험선호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성향과 자산구성의 관계

투자성향이 보수적인 위험회피형의 투자자는 투자로 인한 원금손실을 원하지 않으므로 자산구성도 원리금보장형 위주로 구성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수익과 약간의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위험중립형 투자자는 투자로 인한 약간의 손실 위험은 감수할 것이므로 자산구성도 원리금보장형과 안정형, 수익형을 골고루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수익을 위해 많은 손실을 감수하는 위험선호형 투자자는 자산구성도 수익형 위주로 구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가 위험과 수익을 어떻게 받아드리고 행하느냐에 따라 그 자산구성도 다르게 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 자산운용 전략

1) 자산운용전략의 구분

투자성향에 따른 자산구성이 자산운용을 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합리적인 자산운용전략이 필요합니다

개인적 요인에 따른 자산운용전략

- 장기투자
- 연령에 따른 자산운용
- 위험선호도에 따른 자산운용

시장 요인에 따른 자산운용전략

- 분산투자
- 시장사이클에 따른 자산운용
- 위험과 수익을 고려한 자산운용

- 2) 개인적 요인에 따른 자산운용전략
- ① 장기투자

<개념>

- 단기투자의 반대개념
- 자산운용전략을 세우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투자방법 (금융상품의 장기보유를 뜻하는 것음 아님)

<필요성>

-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서 투자함
 - → 조급해지지 않고 안정적이며 자신이 세운 자산운용전략에 맞춰 진행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훨씬 합리적임
 - → 장기간 운용되는 퇴직연금제도에 적합함

<장기투자효과 분석>

아래의 한,미 양국의 주식시장 수익율을 비교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투자시에는 위험은 줄어들고 그에 따른 평균수익률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장기투자에 대한 효과는 선진국일수록, 고령화가 진전된 나라일수록, 기업연금이 도입된 나라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구분		1년	5년	10년
미국주식시장	손실발생확률	22.5%	13.2%	0.0%
	연평균수익률	12.9%	16.4%	20.4%
한국주식시장	손실발생확률	36.1%	20.6%	19.0%
	연평균수익률	18.5%	23.4%	25.5%

<자료: 한국경제신문 2006년 4월24일자>

② 연령에 따른 자산운용

• 퇴직시점이 많이 남은 투자자 : 퇴직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고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음

• 퇴직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투자자 : 저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③ 투자성향에 따른 자산운용

• 위험선호도란 투자를 할 때 투자자가 선호하는 위험의 정도를 의미

- 위험 회피형 성향: 저위험투자를 선호

- 위험 중립형 성향 : 중간 정도의 위험투자를 선호

- 위험선호형: 고위험투자를 선호

3) 시장 요인에 따른 자산운용전략

① 분산투자

< 개념 >

하나의 자산에 집중투자하지 않고 대상별 ,종목별,지역별,시기별로 분산하여 집중투자에 따른 투자위험을 줄이는 투자방법 (무조건 나눠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 "







〈분산투자의 예〉

- 대상별 분산투자 : 주식, 채권, 부동산

- 종목별 분산투자 : 주식 - 금융주, 식품주, 전자관련주 - 지역별 분산투자 : 원화자산(국내), 외화자산(해외)

- 타이밍 분산투자 : 상품의 구입시기를 시장동향에 따라 투자시기를 나누어 실시함

< 필요성 >

수익을 극대화 시키기보다는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안전한 자산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 효과 >

분산투자의 효과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투자자 박씨와 김씨가 있다고 가정하고 투자자금은 1억씩이 있을 경우 투자자 박씨는 A주식에 1억을 모두 투자했고 투자자 김씨는 A주식과 B주식에 반반씩 투자했을 경우 A주식의 주가가 급등하면 투자자 박씨는 아주 높은 수익률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투자자 김씨는 박씨에 비해 적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A주식의 주가가 급락하고 B주식의 주가가 급등했을 경우 투자자 박씨는 A주식에만 집중투자했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는 반면 투자자 김씨는 A주식의 손실을 B주식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분산투자는 위험을 분산하게 되므로 안전한 자산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② 시장사이클(market cycle) 따른 자산운용

- 경기주기와 마찬가지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호황과 불황을 반복함
- 현명한 투자자는 약세장에서 빠져나오고 강세장에 투자하나 전문가조차 이러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
- 일반 투자자가 시장사이클의 변동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적립식 투자임
- 적립식 투자 : 정기적(매달, 매반기 등)으로 동일한 자산에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여 투자결과가 시장변동에 영향을 덜 받도록 하는 자산운용방식

③ 위험과 수익을 고려한 자산운용

- 어떤 투자에서도 수익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있음
- 대가 없는 수익은 바랄 수 없음.

마. 금융상품의 종류

※ 대상상품의 종류

원리금 보장상품

- •예금,적금,보험계약(금리연동형,이율보증형(GIC),변액보험 제외)
- •국채,지방채,통화안정증권

투자상품

채권	국내·외(OECD국)투자적격 채권
주식	국내·외(적격 해외주식시장)상장주식(KDR포함) 국내·외(국내 판매분)뮤추얼펀드
수익증권	신탁회사 및 국내·외(국내 판매분) 자산운용사 발행
기타	투자적격 CP,MBS,SLBS,최대손실 40% ELS·DLS

- 예금 : 일정기간 동안 약정한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일정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
- 적금 : 일정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
- 보험계약 : 금리연동형과 이율보증형 보험이 있는데 금리연동형은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하는 상품이고, 이율보증형은 정해진 금리를 일정기간 보증해주는 상품
- 국채 : 정부 및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 지방채 :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특수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등이 발행하는 채권
- 채권 :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일이 미리 정해져 있는 한시적인 증권이고 회사의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원금과 이자 이외에 추가적인 청구권은 없습니다.
- 주식 : 만기가 정해지지 않고 기업에 출자한 원금의 상환약속을 받지는 못하나 기업의 가치가 증가할 수록 청구권의 가치가 증대되는 증권
-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하며 투자신탁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의 단위는 1주,2주라고 말하는데 수익증권 거래시에는 이것을 좌라고 말합니다.

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운용 가능한 상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급여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형과는 다르게 근로자인 가입자가 제도의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고, 이를 적립한 부담금으로 가입자 책임하에 스스로 운용하여 그 실적에 따라 본인의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추가규정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추가적인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보안장치 차원

- 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mark>간접투자</mark>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험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 * 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험자산이라 함은 주식 및 투자증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에서는 가입자는 위험자산에는 간접투자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② 위험자산에 간접투자하는 운용방법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 투자한도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는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운용방법별로 100분의 40을 말합니다.

사. 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융상품의 수익률

원리금보장상품인 정기예적금의 경우 상품선정 시점의 이자률이 확정적인 것이나, 수익증권의 경우는 과거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은 과거 수익률을 통해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금융상품 선정 및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 1)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본원칙
 -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생활재원으로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 (자산운용의 전략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할지를 결정)
 - 이해가 쉽고 변경이 용이한 운용방법을 선택
 - 너무 복잡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피함
 - 가능한 한 다양한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위험을 분산
 - 전체 자산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

2) 자산 운용의 단계



필수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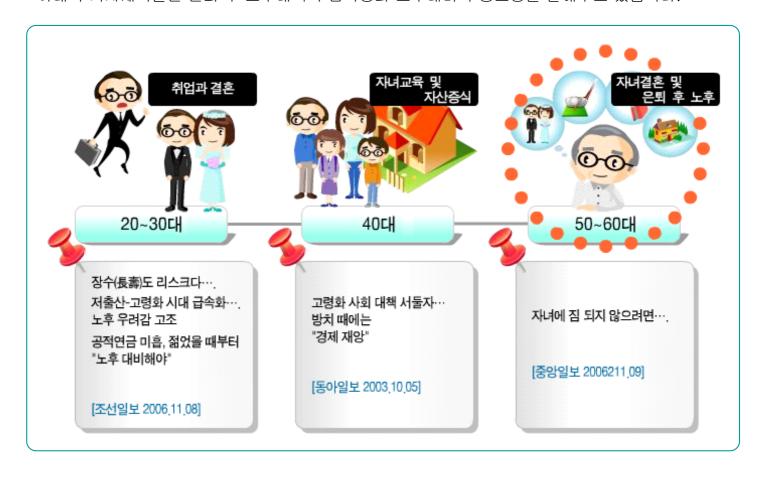
가. 배경 및 중요성

삶에 있어서 각 연령대별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30대에는 취업과 결혼이 가장 큰 삶의 이슈가 될 것이고, 40대에 들어서는 자녀교육과 자산증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것이고, 50대와 60대에는 자녀의 결혼과 은퇴 후 노후의 삶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애에 걸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사전에 준비할 경우 우리는 많은 고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 생애전반에 걸쳐 계획을 세우는 생애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은퇴 후의 노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제목들은 은퇴 후 노후대책의 심각성과 노후대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추정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급속도로 인구노령화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인구노령화로 인해 1999년 UN은 한국을 노령화 국가로 지정하였으며 2023년에는 본격적인 노령국가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이 100년 걸린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이룬 셈입니다.

이처럼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후 노후비용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출산율 저하로 인해 노동인구는 갈수록 줄어들어 노인 1명당 부양자 수가 2000년 9.9명에서 2050년에 1.4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는 평생고용 개념이 갈수록 약화되면서 경제활동기간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조기은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제활동기간보다 은퇴 후 노후기간이 더 길어질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후설계를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 노후 설계시 고려사항

가족구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가계자금의 흐름도 변하게 되므로, 노후설계에 있어 가족에 대한 고려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보유한 자산 및 투자자산을 파악하는 재무사항에 대한 고려는 노후설계를 하는데 있어 준비자금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필요자금 및 준비자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자금이란 앞으로 있을 은퇴 후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의 총합을 말하며, 준비자금이란 보유자산 및 투자자산을 운용하여 필요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을 뜻합니다.

이렇게 필요자금 및 준비자금을 고려한 뒤에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부족자금입니다. 부족자금은 노후설계를 하는데 있어 필요자금을 축적하기 위해 준비한 자금의 부족분으로, 필요자금과 준비자금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재무, 필요자금, 준비자금, 부족자금 등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만 자신의 노후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노후설계방법

먼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생활의 정도를 파악하여 그 생활수준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현재가치금액으로 산정하며, 여기서 고려하는 항목은 생활비, 여가생활비, 의료비 및 사후정리자금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자금을 계산합니다. 필요자금 대비 준비자금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부족자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액이 많이 발생할 경우 필요자금 및 준비자금을 조정하면 됩니다.

